

등록금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학칙 제4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금등록) 현금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부방법) ① 등록금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 휴학을 한 자가 복학을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

휴 학 일	대체 인정 금액
~ 수업일수 1/4	등록금 전액이월
~ 수업일수 1/3	등록금 1/3 납부
~ 수업일수 1/2	등록금 1/2 납부
수업일수 1/2 초과	전액 납부

③ 군입대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시 전액 대체 인정한다.

④ 일반 휴학자가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일반 휴학일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 등록금의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의 개시 전 1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학년 입학 당시의 등록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제5조 (등록금의 반환) ①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아래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미복학제적 등의 사유로 등록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5.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휴학을 한 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자 중 등록금 이월 휴학을 연속적으로 한 경우, 다수의 휴학처리 중 학기개시일로부터 가장 많이 경과한 휴학처리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1. 당해 학기 개시일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반환신청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3. 23, 2010. 12. 2, 2020. 3. 1>
2. 당해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7. 3. 23, 2010. 12. 2>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6조 (징벌) ① 총장은 매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보칙) ① 현금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과 등록(수강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그 학기 수업일수가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 휴학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면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은 소멸한다.<개정 2010. 12. 2>

② 8개 학기를 등록하고도 소정의 졸업 학점에 미달된 자는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건축학과는 10개 학기로 한다. <단서조항삽입 2005. 9. 15>

③ 9학기 이후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납부한다. 단, 건축학과는 11개 학기 이후로 한다. <단서조항삽입 2005. 9. 15>

신청학점수	등록금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11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12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제8조 (준용) 이 규정으로 정한 이외의 현금 등록 및 등록금에 관한 필요 사항은 등록금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3. 23, 2010. 12. 2>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제7조 (보칙) 제3항은 1999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휴학생의 등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 휴학자의 등록금 유효시기는 제3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시행일 이전 매학기 수업일수의 1/2이 경과되기 전에 일반 휴학을 한 자가 시행일 이후 복학을 하는 경우에 납입금액이 휴학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9.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1. (경과조치) 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부터 적용한다.
12.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